

#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 DCDS 운영사례

송윤아 연구위원, 마지혜 연구원

- 지난 6월 신용카드회사는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DCDS)의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수익에 대한 감독 이 강화되자 신규판매를 중단함.
  - DCDS란 여신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한 고객이 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해당 채무를 면제 · 유예하는 제도임.
  - 2005년부터 국내에서는 전업 신용카드회사에만 DCDS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신용카드회사의 DCDS 취급은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되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DCDS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요율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보험과 달리, DCDS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신용카드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과 불완전판매가 문제로 지적됨.
  - 특히, 2005~2016년 기간 동안 신용카드회사의 수입수수료 대비 계약상 책임보험(CLIP) 보험료는 18.5%로, 사망보험 등에서 영업보험료 대비 순보험료의 비중이 80%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DCDS 수수료는 과도한 수준임.
- 우리나라 DCDS는 미국의 그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DCDS와 대체상품 간 규제차이로 인해 DCDS 공급자의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 회계조사원(GAO)은 DCDS와 대체상품에 대한 규제차이로 인해 신용카드회사의 DCDS 수익이 수입수수료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DCDS에 대한 소비자의 편익 대비 비용이 높으며, 높은 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DCDS가 신용보험을 대체한다고 지적함.
- 우리나라와 미국의 DCDS 운영사례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규제차익과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 및 효용이 제한됨을 보여줌.
-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기능 측면에서 경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및 효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업권 간 장벽이 낮아지고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업 연계 부가서비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DCDS 운영사례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을 제시함.

## 1. 검토 배경



- 지난 6월 신용카드회사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수익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신규 판매를 중단함.1)
  - 신용카드회사의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DCDS: 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취급 은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되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DCDS는 신용카드회사의 부수업무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험상품과 달리 상품설계, 수수료율, 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 없이 운영됨.
  -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8개 전업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실태점검(2015, 8, 31~10, 26) 결과, DCDS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함.<sup>2)</sup>
    - 신용카드회사의 DCDS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 정되어 DCDS 등 부가서비스 판매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됨.<sup>3)</sup>
    - 또한 DCDS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운영되지 않도록 매년 보험개발원 등 외부전 문기관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함 ⁴)
- DCDS처럼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업권 간 장벽이 낮아지고,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업 연계 부가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 논의가 시급함.
-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와 미국 신용카드회사의 DCDS 운영경험으로부터 보험유사 부가서비스5)의 규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sup>1)</sup> 조선비즈(2016, 6, 20), "하나·BC카드, 내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신규 판매 중단".

<sup>2)</sup>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5, 17),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sup>3) 2016</sup>년 9월 2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 16(설명의무 등)이 신설되어 설명의무 대상 및 설명의무 이행의 구체적 확인방법이 규정됨.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회사의 DCDS가 부가서비스로서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됨.

<sup>4)</sup> 이에 앞서 DCDS의 과도한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원은 DCDS와 유사한 보험상품의 요율을 감안하여 DCDS의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함. 상세는 다음 자료를 참조 바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2. 20),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회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개선 및 미지급 보상금 환급 추진".

<sup>5)</sup> 본고에서 '보험유사 부가서비스'란 DCDS처럼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를 의미함.

● 신용카드회사의 DCDS 운영경험은 기능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규제 적용이 소비자의 편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2.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시장 현황



#### 가.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의 개념

- DCDS란 여신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한 고객이 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해당 채무를 면제 · 유예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서는 전업 신용카드회사에만 판매가 허용됨.
  - 전업 신용카드회사는 2007년 금융감독원의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서비스 소비자보험 가이드라인" 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청구액에 대한 채무면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DCDS 판매 허용에 관한 논의와 입법 추진이 은행과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있었으나, 모두 불발되어 DCDS의 허용 및 불허를 명시한 법률은 최종 입법되지 않음.
    - 2009년 은행과 신용카드회사에 DCDS 판매를 허용하는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폐기되었고. 2010년 DCDS를 보험으로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폐기됨.
- 신용카드회사는 계약상 책임보험(CLIP: 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에 가입함으로써 신용 카드회원의 채무면제나 유예로 인한 자사의 손실위험을 손해보험회사에 이전하고 있음.
  - DCDS는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과 금융회사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고객과 보험회사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음(⟨그림 1⟩ 참조).
- DCDS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보험<sup>6)</sup>은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간 3자계약임(〈그림 2〉참조).<sup>7)</sup>

<sup>6)</sup> 미국에서는 credit insurance 또는 credit life(health, unemployment, disability) insurance, 영국에서는 payment protection insurance라고 표현함.

<sup>7)</sup> Durkin, T.A., and Elliehaousen, G.(2012), "Consumers and Debt Protection Products: Results of a New Consumer Survey", Federal Reserve Bulletin.

- 신용보험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인식하여 보험회사가 금융회사에 대출잔액을 변제하는 보험임.
  - 주요담보는 사망. 상해 또는 질병 장기입원. 비자발적 실업. 화재손해담보 등임.
- 개인신용보험의 경우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이지만, 신용보험을 대출실행 금융회사가 단체보험형태로 판매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채권자가 되며 피보험자는 채무자가 됨.
- DCDS와 신용보험은 신용위험 보장이라는 동일한 금융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의 입장에서 DCDS는 '보험'으로 인식될 수 있음.
- 보증보험은 지급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신용보험 또는 DCDS와 상이함(〈표 1〉참조).
  - 보증보험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전액 구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위험의 대가라기보다는 취급수수료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손해보험과 마찬가 지로 대수의 법칙에 기초한 예정원가의 성격을 띠고 있음.

〈그림 1〉 DCDS 거래구조 〈그림 2〉 개인 신용보험 거래구조 금융사 금융시 원리금 (채권자) 사고발생시 (채권자) 원리금 사고발생시 상환 보험금지급 상환 보험금지급 보험료 대출금 대출금 납부 보험료납부 고객 고객 보험사 보험사 (채무자) (채무자 DCDS 신용 보험 수수료 납부 계약체결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표 1〉DCDS·신용보험·보증의 비교

구분	DCDS	신용보험	채무이행보증	신용보증
보험사고	사망, 장해, 실업 등	사망, 장해, 실업 등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채무변제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채무변제 후 구상	채무변제 후 구상
계약자	채무자	채무자(개인) 채권자(단체)	채무자 (타인을 위한 보증)	채권자 (자신을 위한 보증)
제공사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주: 신용보험을 대출실행 금융회사가 단체보험형태로 판매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채권자, 피보험자는 채무자가 됨.

#### 나.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시장

- 2005년 1월 삼성카드에서 DCDS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0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회사들이 DCDS 판매를 통해 수취한 수수료는 1조 4,754억 원에 이름(〈표 2〉 참조).
  - 2005년 1월 삼성카드에서 처음 취급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다른 카드회사들도 판매를 시작하여 2011년 4월부터는 모든 전업 신용카드회사(7개)에서 DCDS 상품을 취급함.
  - 가입회원 수 및 보장대상 채무액 증가로 인해 DCDS 수입수수료가 매년 증가하여 2015년 2,580 억 원에 이름.
    - 2016년 6월 말 기준, 7개 신용카드회사의 DCDS 가입회원 수는 약 310만 명이며, 2015년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인 총 채무액은 약 67조 원에 달함.

〈표 2〉 DCDS 수수료 및 수입(2005~2016년 2사분기)

연도	가입회원 수 (천 명)	채무액 (억 원)	수입수수료 (억 원)	인당채무액 (백만 원)	수수료율	채무액 증가율	수입수수료 증가율
2005	248	9,418	65	3.80	0.69%	_	_
2006	474	41,188	231	8.69	0.56%	337.3%	255.4%
2007	590	57,566	281	9.76	0.49%	39.8%	21.6%
2008	747	82,023	373	10.98	0.45%	42.5%	32.7%
2009	1,141	136,509	614	11.96	0.45%	66.4%	64.6%
2010	1,532	226,312	1,057	14.77	0.47%	65.8%	72.2%
2011	2,129	315,750	1,525	14.83	0.48%	39.5%	44.3%
2012	2,934	452,172	2,110	15.41	0.47%	43.2%	38.4%
2013	3,278	552,983	2,291	16.87	0.41%	22.3%	8.6%
2014	3,465	619,546	2,416	17.88	0.39%	12.0%	5.5%
2015	3,323	666,747	2,580	20.06	0.39%	7.6%	6.8%
2016 1/2	3,129	321,850	1,211	10.29	0.38%	_	_
합계	22,990	3,482,064	14,754	15.15	0.42%	_	_

주: 수수료율 = 수입수수료 / 총 채무액.

자료: 여신금융협회.

- DCDS 보장대상 채무액 대비 수수료의 비율, 즉 수수료율은 2005년 평균 0.69%에서 2016년 상반기 0.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수수료율 감소와 보장대상 가입회원 수 및 채무액 증가율 둔화로 수입수수료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DCDS의 과도한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원은 DCDS와 유사한 보험상품의 요율을 감안 하여 DCDS 수수료율의 인하를 적극 유도함.
  - 2012년 11월에는 보험개발원의 수수료율 검증결과에 따라 삼성카드 등 3개사는 2년 이상 DCDS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5~10% 인하함.8)
  - 2013년 5월, 신용카드회사의 DCDS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감독기관의 지적에 따라 수수료율을 12.1% 내리고 장기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 인하 조치함.9)
- DCDS 판매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과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문제로 대두되었음.
  - 금융감독원은 보상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수취, 카드채무 면제 등 보상누락,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불명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 등의 문제를 지적함. 10)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8개월간(2012년~2015년 8월) DCDS 관련 소비자상담 504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396건(7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11)
    - 구체적으로, 상품가입 동의 의사 확인 미흡(245건, 48.6%),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1건, 16.1%), 무료 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0건, 13.9%) 등

# 3. 과도한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수수료



- 2005~2016년 기간 동안 DCDS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1,352억 원)은 총 수입수수료(1조 4754억 원)의 9.2%에 불과하고, 신용카드회사가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2,726억 원)의 49.6%에 불과함.
  - 카드회사의 보상률이 2005년 1.5%에서 2016년 11.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률이 당초 예상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3〉참조).
  - 이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신용카드회사는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제외할 경우, DCDS 판매를 통해서 약 1조 2,029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sup>8)</sup>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2 20)

<sup>9)</sup>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 4. 30), 「채무면제 및 유예 계약(DCDS)의 이해와 시장확대 가능성」, 『KB 지식 비타민』, 제14-34호.

<sup>10)</sup>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2, 20).

<sup>11)</sup> 한국소비자원(2015, 12), "카드회사 부가상품(채무면제, 유예상품)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3) DCDS 수익 구조(2005~2016년 2사분기)

(단위: 천명, 억원)

연도	수입 수수료 (A)	CLIP 보험료 (B)	보상금 (C)	카드회사 수입 (A-B)	보험회사 수입 (B-C)	CLIP보험료 /수입수수료	보상금 /수입수수료	보상금 /CLIP보험료
2005	65	26	1	39	25	40.0%	1.5%	3.9%
2006	231	88	10	143	78	38.1%	4.3%	11.4%
2007	281	84	13	197	71	29.9%	4.6%	15.5%
2008	373	90	19	283	71	24.1%	5.1%	21.1%
2009	614	133	32	481	101	21.7%	5.2%	24.1%
2010	1,057	227	64	830	163	21.5%	6.1%	28.2%
2011	1,525	324	88	1,201	236	21.2%	5.8%	27.2%
2012	2,110	411	140	1,699	271	19.5%	6.6%	34.1%
2013	2,291	387	328	1,904	59	16.9%	14.3%	84.8%
2014	2,416	372	247	2,044	126	15.4%	10.2%	66.3%
2015	2,580	394	276	2,186	118	15.3%	10.7%	70.1%
2016 1/2	1,211	189	134	1,022	55	15.6%	11.1%	70.9%
합계	14,754	2,726	1,352	12,029	1,374	18.5%	9.2%	49.6%

주: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여신금융협회.

- 2005~2016년 기간 동안 신용카드회사의 수입수수료 대비 CLIP 보험료는 18.5%로, 사망보험 등에서 영업보험료 대비 순보험료의 비중이 80%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DCDS 수수료는 과도한 수준임.12)
  - DCDS가 동일한 금융기능을 가지는 신용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상품에 가입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 '보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료 구조체계와 비교·대조함으로써 수수료 과다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DCDS의 수입수수료, CLIP 보험료, 판매비용 등은 신용보험의 일반적인 보험료 구성체계상 각각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CLIP 보험료는 DCDS에 가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장래 보상금 지급의 재원에 해당하며, 이는 신용보험의 순보험료 항목과 유사함.
    - 판매비용 등은 신용카드회사가 DCDS를 판매·관리하는 데 소요되므로, 신용보험의 부가보험 료 성격을 띠는 것임.
  - 동 기간 동안 신용카드회사의 수입수수료 대비 CLIP 보험료는 18.5%로, 이는 2005년 40%에서 2016년 15.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사망보험의 영업보험료 대비 순보험료 비중이 약 80%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DCDS 수수료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음.

<sup>12)</sup> 한국소비자원(2015, 12).

- 신용카드회사의 과도한 DCDS 수수료 수익은 DCDS와 대체상품 간 규제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DCDS와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대체상품(예를 들어, 신용보험)에 대해 상이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고 신용보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반면, 신용카드회사의 시장지배력은 커짐.

# 4. 미국의 채무면제 · 유예서비스 운영사례 검토



- 우리나라 신용카드회사의 DCDS는 미국의 그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DCDS와 관련하여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수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미국 통화감독청과 주 보험감독당국 간 DCDS의 법적 성격과 감독관할에 대한 오랜 분쟁 끝에, 1990년 연방대법원은 DCDS가 보험업무가 아닌 은행업무라고 판결함. 13)
  - 1998년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국법은행<sup>14)</sup>이 채무 유예계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2002년 DCDS 관련 규정을 제정함. <sup>15)</sup>
    - OCC의 상기 규정은 DCDS가 은행상품이므로 연방법에 의한 감독을 받으며, 국법은행이 이 서비스를 취급하는 데에 대해 주 보험감독당국은 감독권이 없음을 명시함.
- 2002년 OCC의 규정 제정으로 DCDS의 법적 성격과 감독관할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신용카드회사의 DCDS 상품이 신용보험을 대체하기 시작함.
  - 1917년 개인신용보험이 도입되고 1928년 단체신용보험이 판매된 이후 신용보험이 신용위험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됨.
  - DCDS는 1960년대 초 개발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형 신용카드회사는 보험회사 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단체신용보험을 판매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 DCDS 판매를 본격화함.

<sup>13)</sup> DCDS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바람; 김선정(2015), 「미국에 있어서 채무면제 및 지급유예계약(DCDS)에 대한 연방규제의 전개」, 『보험법연구』, 9권 2호, 보험법학회; 정경영(2016),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제28권 제1호.

<sup>14)</sup> 국법은행(National Bank)은 연방법인 National Bank Act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영리목적의 상업은행을 의미함; 김선정(2015)을 인용.

<sup>15) 12</sup> Code Federal Regulation Part 7 and 37.

● 2009년 기준 신용카드채무 관련 신용보험 시장의 점유율이 30% 이상인 3개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2001년 7억 5,700만 달러에서 2009년 1억 8,600만 달러로 75% 감소함.

#### ■ 미국 회계감사원(2011)은 신용카드 채무 관련 DCDS의 신용보험 대체는 규제차이에 기인한다고 지적함. 16)

- DCDS는 연방규제, 신용보험은 각 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용보험은 상품, 판매 등의 규제가 주마다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품 제공이 어렵고 마케팅 비용도 더 높음.
- 무엇보다도, DCDS는 수수료 및 대리인 자격요건 규제가 없고, 상품 설계 및 보장 조항에 대한 제한 이 적으며, 일단 개발한 상품은 추가적인 수정작업 없이 전국적으로 판매 가능함.
- 반면, 신용보험은 보험료의 합리적 산정 의무 및 최저손해율 제한이 있고, 상품 구조 및 보장내용 설계 시 주보험감독당국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용보험을 취급하려는 금융회사는 각 주의 보험법규에 따라 보험판매 대리인 자격을 취득해야 함.
  -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의 신용보험모델규제(Credit Insurance Model Regulation)는 보험회사가 신용보험 손해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함.
- 미국 회계감사원(2011)은 주요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이 수입수수료의 55%를 차지하는 등 DCDS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편익대비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 7개 신용카드회사의 DCDS 수입수수료는 2009년 기준 24억 달러로, 이 중 지급보상금은 21%(5억 1.800만 달러), 사업비와 준비금은 24%(5억 7.400만 달러), 수익은 55%(13억 달러)를 차지함.
  - 반면, 동 기간 신용카드채무 관련 신용생명보험의 손해율은 61%로 단체생명보험의 손해율(83%) 보다는 낮으나, DCDS에 비해 높음.

〈표 4〉 미국의 DCDS와 신용보험 규제

구분	DCDS	신용보험		
상품유형	은행상품	보험상품		
규제	연방법	주법		
감독당국	연방은행규제당국	각주 보험감독당국		
계약구조	카드회사와 고객 간 양자 계약	보험회사, 카드회사, 고객 간 삼자 계약		
상품구성	전국 동일 상품	주별로 상이		
가격규제	가격규제 없음	주별 가격규제 있음		

자료: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1).

<sup>16)</sup>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1), "Consumer Costs for Debt Protection Products Can be Substantial Relative to Benefits but Are Not a Focus of Regulatory Oversight".

### 5. 결론 및 시사점



- 은행권의 DCDS 제공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증연장과 같이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본업 연계 부가서비스 등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 논의가 시급함.
  - 정경영(201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신은 신용카드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의 주요업무이므로 신용카드회사에 적용되었던 논리와 동일한 이유로 은행도 신용카드 채무면제 및 유예의 판매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제조사나 판매사가 보증연장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을 부가서비스로 해석하였음.
- 불완전판매와 달리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관찰이 필요함.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DCDS 소비자 상담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 소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음.
- ➡ 우리나라와 미국의 DCDS 운영사례는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규제 차익과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 및 효용이 제한됨을 보여줌.
-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기능 측면에서 경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DCDS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sup>17)</sup>, DCDS가 신용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가입회원의 입장에서는 DCDS를 보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임. <sup>18)</sup>
    - 미국 사례에서는 DCDS가 신용보험을 대체하였는데, 이는 DCDS가 신용보험과 동일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함. kiqi

<sup>17)</sup> 정경영(2016).

<sup>18)</sup> 이상제(2006).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 서비스와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